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57
----------	--------

제출년월일 : 202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노동취약계층과 플랫폼 노동자 정의 추가(안 제2조)
- 나. 노동권익 보호 증진 사업 추가(안 제10조)
- 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신설(안 제11조)
- 라. 불필요한 규정 삭제(제21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5. ~ 10. 25.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5)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2023. 1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교육(이하 “노동권 교육”이라 한다)이란”을 “교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나.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다. 여성,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등 성별, 연령별,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 받는 취약노동자

6.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 보전
2. 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로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관내 플랫폼 업체에 종사하는 자
2.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등록한 자

③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권익위원회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 앞에 “제3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권익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노동권 보장 <u>교육</u>(이하 “<u>노동권 교육</u>”이라 한다)이란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할 경우 알아야 할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 작성방법,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노동권 및 각종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교육이란</u> ----- ----- ----- ----- ----- ----- ----- ----- ----- ----- -----.</p> <p>5. “<u>노동취약계층</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u>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u></p> <p>나. 「<u>근로기준법</u>」과 <u>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u></p>

<신 설>

제10조(노동권의 보호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권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7. (생략)

<신 설>

②·③ (생략)

<신 설>

노동자

다. 여성,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등
성별, 연령별,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 받는 취약노동자

6.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
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노동권의 보호 증진 사업)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1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 · 제12조 (생략)

제3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권익위원회

<신설>

제13조 ~ 제18조 (생략)

제4장 보칙

<신설>

제19조 · 제20조 (생략)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할 수 있다.

1.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 보전

2. 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로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관내
플랫폼 업체에 종사하는 자

2.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등록한 자

③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
12조와 같음)

<삭제>

제3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권익위원회

제14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4장 보칙

제20조 · 제21조 (현행 제19조 및 제
20조와 같음)

<삭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1조(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 보전
2. 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연평균 1억원 미만 예산의 범위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4. 작성자 : 관광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최주연 (☎ 3153-8693)